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일시	2021. 2. 9.(화) / 총 11매(본문6, 붙임5)	
담당 부서	건설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주종완, 사무관 염광은, 주무관 김민태 • ☎ (044) 201-3512, 4962
보 도 일 시		2021년 2월 10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0.(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58년만의 혁신, 건설관련 공제조합 전면개편 추진

- 과감한 경영쇄신 및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 뒷받침

【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 】

◈ **조합 경영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그 성과를 조합원에 귀속**

- 온라인 업무비중(95% 내외) 확대 등을 고려,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
- 업추비,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임직원의 과도한 혜택 대폭 감축**
- 여유자금의 **투자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성과급 지급조건에 연계

【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

◈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 **협회장 및 이사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 ('22.6.1일부터 시행)
-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
-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 조정 (30명 → 20명)**
-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공정하게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
-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 기회를 위해 **임기 단축 (3+α → 2+2년)**
- 건산법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안건 사전협의**

◈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를 개최하여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 공제조합 현황

□ **공제조합**은 1960년 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3개 공제조합은 총 **출자금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성장**과 **안정**을 **지탱**하는 한 축을 담당해 왔다.

< 건설관련 공제조합 일반현황 ('20.12월) >

구 분	설립	조합원	출자금	보증규모	연매출	직원수
건설공제	1963	12,521개사	6.1조	110.5조	4,518억	457명
전문공제	1988	52,850개사	4.9조	29.8조	3,747억	434명
기계공제	1996	7,822개사	0.8조	5.3조	400억	68명
합계		73,193개사	11.7조	145.6조	8,665억	959명

(2) 추진배경

□ 최근 **건설산업**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사업자**들도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이에, **공제조합**도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스스로 과감하게 경영혁신**을 이루어내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업계 및 공제조합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함께 마련하였다.

(3)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

□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로 상대적으로 영업이 용이한 구조이나, 이에 비해 **임직원들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토교통부-공제조합-협회는 TF*를 구성하여 ❶**지점개편안**, ❷**임직원 비용감축**, ❸**투자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 '20.11～'21.2, 총 18차례 개최(주2회)

❶ 지점개편안

□ **금융업계**는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객편의 증대** 및 **비용절감** 추진 중이나,

○ 공제조합은 **기존 대면방식**을 전제로 다수의 소형**지점**을 **운영**하여, **경영비효율** 및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3개 공제조합은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하기로 하였다.

○ **건설공제**의 경우 **현재 39개** 지점을 **금년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축소하고, **'22.6월까지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 **전문공제**는 **현재 32개** 지점을 **'22.2월 28개**로 축소하고, **'25.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단계적 축소하기로 하였다.

○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금년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3.2월까지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❷ 임직원 비용감축

□ 공제조합은 법정 의무가입 상품 판매가 수익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임직원들이 **과도한 업추비,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받는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공제조합의 영업특성 및 타 금융기관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합 임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대폭 감축**하기로 하였다.

○ **업추비**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한도**를 합리적 수준('22년은 매출액의 0.3%, '25년까지 0.25%)으로 관리하고,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를 위해 '**업추비 등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현금으로 지출되는 **대외활동비**는 **사용내용**을 기록하며 '25.1월까지 **업추비** 등으로 **통합·삭감**할 계획이다.

○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수익성 및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 **건설공제**는 '20년 성과급을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 35.8 →17.4억원(▵50%)으로 감소 예상되며, **전문공제**는 **2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복리후생비**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 떨어진 항목은 **폐지**하여 '25년까지 **20% 내외**를 감축한다.

○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대폭 감축**한다.

❸ 투자효율화

□ 조합원 출자금으로 형성된 **대규모 여유자금**이 약 4조원에 달하나, **수익률**은 타 연·기금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국민연금 수익률 11.31%, 공무원연금은 8.36%인 반면, 공제조합 수익률은 2~4% 대

□ 이에, **'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21년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 + 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해, 건설공제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20년 2%에서 **'21년 25%, '24년**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 전문공제, 기계공제는 현행 80% 수준을 유지

(4)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 공제조합의 투명·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편한다.

○ 건산법령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이나,

- 일부 공제조합은 **협회장 및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제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서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이에,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 한다.

○ 이 경우 조합원이기도 한 **협회장만 당연직 운영위원**을 **유지** 시 다수·소수출자자,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한다.

* 조합원 중 회원사 비율: 건설공제 71.2%, 전문공제 64.2%, 기계공제 71.3%

○ 이와 함께,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인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 다만, 이사장은 운영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 부여 등 제도개선 추진

○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를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며, 법령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사전협의**토록 한다.

(5) 향후계획

□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하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1.4월 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공제조합은 우리 건설산업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금번 개혁은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금번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정책과 염광은 사무관(☎044-201-3512)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1 공제조합 경영혁신 방안

<table>
<tr><th>구분</th><th>세부방안</th></tr>
<tr><td>❶지점개편</td><td>• 온라인 업무비중(95% 내외) 확대를 고려, 건공 75%, 전공 38%, 기공 50% 축소
<table>
<tr><th>구분</th><th>최대치</th><th>현재('20.12)</th><th>개편(안)</th></tr>
<tr><td>건설공제</td><td>40개('05)</td><td>39개</td><td>• (1단계) 34개로 축소('21.12) → (2단계) 7본부+3지점('22.6)</td></tr>
<tr><td>전문공제</td><td>57개('95)</td><td>32개</td><td>• (1단계) 28개로 축소(~'22.2) → (2단계) 24개로 축소(~'24.2) → (3단계) 20개로 축소(~'25.2)</td></tr>
<tr><td>기계공제</td><td>21개('95)</td><td>6개</td><td>• (1단계) 5개로 축소(~'21.6) → (2단계) 3개로 축소(~'23.2)</td></tr>
</table></td></tr>
<tr><td>❷업추비 등</td><td>• '22년은 '20년 대비 30% 내외 감축 → '25년까지는 35% 내외 감축
• 기관장 업추비 지출내역 홈페이지 공개, 현금성 대외활동비 사용내역 기록
<table>
<tr><th>구분</th><th>최대치</th><th>'20년 예산</th><th>'21년 예산</th><th>'22년 개편(안)</th><th>'25년 개편(안)</th></tr>
<tr><td>건설공제</td><td>26.2억원 ('17)</td><td>25.7억원</td><td>15.0억원</td><td>14.2억원</td><td>11.8억원</td></tr>
<tr><td>전문공제</td><td>15.3억원 ('17)</td><td>14.8억원</td><td>14.8억원</td><td>10.3억원</td><td>9.6억원</td></tr>
<tr><td>기계공제</td><td>4.1억원 ('21)</td><td>3.5억원</td><td>4.1억원</td><td>2.7억원</td><td>2.4억원</td></tr>
</table></td></tr>
<tr><td>❸복리후생비</td><td>• 중복항목 통합 및 피복비 등 시의성 떨어진 항목 폐지 → 건공 18%, 전공 14%, 기공 26% 축소('25년까지)
<table>
<tr><th>구 분</th><th>건공</th><th>전공</th><th>기공</th></tr>
<tr><td>'21년 예산</td><td>33.7억</td><td>25.1억</td><td>2.7억</td></tr>
<tr><td>'25년까지</td><td>27.7억</td><td>21.6억</td><td>2.0억</td></tr>
</table></td></tr>
<tr><td>❹임원퇴직금</td><td>• 3개 조합 모두 퇴직금 배수를 1배로 축소 → 건공 67%, 전공 60%, 기공 33% 감축(기존 임원을 대상으로 하되, 시행일부터 적용)
<table>
<tr><th>구분</th><th>현재</th><th>개편(안)</th></tr>
<tr><td>건설공제</td><td>월급여의 2~3배</td><td>1배</td></tr>
<tr><td>전문공제</td><td>월급여의 2~2.5배</td><td>1배</td></tr>
<tr><td>기계공제</td><td>월급여의 1.5배</td><td>1배</td></tr>
</table></td></tr>
<tr><td>❺연가보상비</td><td>• 노사협의를 거쳐 '25년까지 연가 보상대상 일수 감축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건공</th><th colspan="2">전공</th><th colspan="2">기공</th></tr>
<tr><th>보상일수</th><th>평균(원/명)</th><th>보상일수</th><th>평균(원/명)</th><th>보상일수</th><th>평균(원/명)</th></tr>
<tr><td>'21년</td><td>16.3일</td><td>944만</td><td>13.5일</td><td>886만</td><td>11일</td><td>253만</td></tr>
<tr><td>'25년까지</td><td>12일</td><td>695만</td><td>9일</td><td>591만</td><td>9.4일</td><td>217만</td></tr>
</table></td></tr>
<tr><td>❻성과급</td><td>•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수익성 및 목표 초과수익률 등에 연동
→ 건공은 '20년 성과급을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 35.8→17.4억원(▵50%)으로 감소 추정, 전공은 20% 이상 감축 전망</td></tr>
<tr><td>❼투자수익률</td><td>• (현재) 목표수익률 없음 → (개선) 최소 국고채(3년) + 2.0% 달성 추진 ('25년까지 5%로 상향)</td></tr>
</table>

붙임2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table>
<tr><th>구분</th><th>현행</th><th>수정대안</th></tr>
<tr><td rowspan="2">❶협회장·이사장
당연직 위원 제외</td><td>· 협회장은 당연직 위원</td><td>· 당연직 운영위원 제외
· 이사장도 당연직에서 제외
*'22.6.1일부터 시행</td></tr>
<tr><td>·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건공·기공은 협회장, 전공은 조합원</td><td>· 위원장은 직접·무기명 투표</td></tr>
<tr><td>❷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td><td>· (위원장) 1인, 호선
· (부위원장) 2인, 호선</td><td>·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선출하되, 전문가 포함
* 특정 조합원에 한정되는 안건은 전문가 주재</td></tr>
<tr><td>❸운영위원 잔여임기</td><td>· 별도규정 없음</td><td>· 잔여임기 단계적 보장(60% 내외)*
* '22년 종료는 '21.12월까지, '23년 종료는 '22.5월까지</td></tr>
<tr><td>❹운영위원 정수</td><td>
<table>
<tr><th>구 분</th><th>정원</th><th>비율</th></tr>
<tr><td>합계(①+②+③)</td><td>30</td><td>100%</td></tr>
<tr><td>조합원</td><td>13</td><td>43.3%</td></tr>
<tr><td>협회장</td><td>1</td><td>3.3%</td></tr>
<tr><td>조합원 계(①)</td><td>14</td><td>46.7%</td></tr>
<tr><td>이사장(②)</td><td>1</td><td>3.3%</td></tr>
<tr><td>정부</td><td>2</td><td>6.7%</td></tr>
<tr><td>정부위촉직</td><td>13</td><td>43.3%</td></tr>
<tr><td>정부측 계(③)</td><td>15</td><td>50.0%</td></tr>
</table>
</td><td>
<table>
<tr><th>구 분</th><th>정원</th><th>비율</th></tr>
<tr><td>합계(①+②+③)</td><td>20</td><td>100%</td></tr>
<tr><td>조합원</td><td>9</td><td>45.0%</td></tr>
<tr><td>협회장</td><td>0</td><td>0.0%</td></tr>
<tr><td>조합원 계(①)</td><td>9</td><td>45.0%</td></tr>
<tr><td>이사장(②)</td><td>0</td><td>0.0%</td></tr>
<tr><td>정부</td><td>2</td><td>10.0%</td></tr>
<tr><td>정부위촉직</td><td>9</td><td>45.0%</td></tr>
<tr><td>정부측 계(③)</td><td>11</td><td>55.0%</td></tr>
</table>
</td></tr>
<tr><td>❺운영위원 직접·무기명 투표</td><td>· 선출방식 미규정
*전형위원회에서 결정 후 총회 선임</td><td>· 총회에서 직접·무기명 투표</td></tr>
<tr><td>❻운영위원 임기</td><td>· 3년+연임 (횟수제한 없음)</td><td>·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td></tr>
<tr><td>❼안건 사전협의</td><td>· 별도규정 없음</td><td>· 국토부 승인사항*, 예·결산 등에 한해 협의
* 정관변경, 보증/융자/어음 요율</td></tr>
</table>

붙임3 **예상 Q&A**

1.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들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단체인데, 정부가 공제조합 개편에 개입하는 이유는?

□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사업 **보증**, 건설자금 **융자** 등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금융기관**

○ **공제조합 부실화** 시 **건설업 동반** 부실화 우려

□ 건산법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조합은 조합원에 대해 출자금의 **8~35배 보증**

○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실화 발생 시 **공적자금 투입** 불가피

구분	출자금	보증금액	출자금 대비 보증금액
건공	6조 2,886억원	110조 4,590억원	**17.6배**
전공	5조 1,134억원	29조 8,144억원	**5.8배**
기공	7,878억원	5조 3,600억원	**6.8배**

○ **'99년 주택사업공제조합** 부실화 당시 **2.8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조합원은 출자금 3.25조원 중 2.4조원 감자)

□ 이에 따라, **건산법 상**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토부 지도·감독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국토부 장관이 「공제조합 감독기준」 고시

○ 또한,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건설관련 공제조합 등 다수의 공제조합**에서 운영위원회의 **조합원위원 수**를 **1/2미만**으로 규정중

2. 공제조합은 건설사들이 주인인데, 건설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회장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 **협회장**도 조합원이므로 공제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여 가능**

○ 일부 공제조합은 **당연직 운영위원인 협회장**이 관행적으로 **운영위원장**을 맡고,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 없이** 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를 통해 **운영위원을 선임**하여 논란 발생

○ 이에, 금번 개편방안을 통해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투표방식을 의무화** 하였으며,

- **협회장만 당연직 위원 유지 시** 다수·소수출자자,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 우려를 감안,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

* 조합원 중 회원사 비율: 건설공제 71.2%, 전문공제 64.2%, 기계공제 71.3%

□ 한편 **협회장**은 건설사업자들이 **각자 1표**(1社1표)를 행사하여 선출된 반면, **공제조합 총회**는 **출자금에 비례**(1좌1표, 1社=1만좌=1만표)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협회장이 곧 공제조합 **총회의 대표라고 보기 어려움**

○ **건설사업자**는 출자금 대비 8~38배 수준의 **보증과 융자를 받는 공제조합의 채무자**이고, **협회장**은 건설사업자 **이익단체의 대표**이므로, **협회장과 공제조합은 이해상충 우려**

3.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외되어도 되는지?

□ 건산법령상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 사업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이므로 제외가 바람직

□ 다만, 이사장이 당연직에서 제외되더라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4.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에 대해 공제조합이 동의한 것인지?

□ 금번 경영혁신방안은 공제조합의 방만경영 지적 등에 따라 **공제조합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방안**으로,

○ 적정성 등에 대해 국토부-공제조합-협회로 구성된 TF를 통해 논의하였으며, 공제조합별 **임단협** 및 **총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 계획

□ 정부는 건산법령 및 공제조합 감독규정 등에서 따라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의무**가 있는 만큼, 금번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